

2019. 1. 21.(월) 14:00

도청 별관 대회의실

-농업인단체 초청 2019년도 농정시책 설명회 -

주요현안 및 협조사항

강 원 도
(농 정 국)

목 차

■ 농정과 소관

1.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홍보 3
2.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 홍보 4
3. 청년 후계인력 육성 · 지원사업 홍보 5
4.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신청 7

■ 축산과 소관

1.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11
2.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사시설 개선 추진 12
3. 축산법 주요 개정사항 홍보 13

■ 유통원예과 소관

1. 농산물 안전성강화(PLS)에 따른 농약사용 준수 17
4. 무 · 배추 채소가격안정제 참여 18
6.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입점 협조 19
7. 식품소재 · 반가공산업 사업 신청 20

■ 친환경농업과 소관

1.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추진 23
2.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 24

목 차

■ 동물방역과 소관

1. AI·구제역·ASF 예방을 위한 자율적 차단방역 강화 27
2. 소득 및 방역 시설·장비 지원 홍보 28
3. 낭충봉아부패병 차단방역 강화 29
4. 축산농가 잔류물질 오·남용 방지 당부 30
5.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사업 추진 32

■ 농산물원종장 소관

1. 창의농업 무한상상실 운영 홍보 35
2. 토종잡곡 종자생산·공급 36

■ 감자종자진흥원 소관

1. '19년산 봄감자 보급종 신청 안내 37

■ 축산기술연구소 소관

1. 축산기술 교육 참여 홍보 43

■ 가축위생시험소 소관

1.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 참여 47

농정과 소관

① 농어촌진흥기금 신청 홍보

- ❖ 지역특성에 맞는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중점 육성지원 및 경쟁력 확보
- ❖ 자립 영농기반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장기 저리자금 지원

□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및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

- 용자금리 인하: (현행) 1.2% → (변경) 1.0% * '18.6.1. 시행
- 상환기간 연장
 - (운영자금)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→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
 - (시설자금)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(기존과 동일)
- 용자한도 상향
 - (개인) 1천만 원 ~ 1억 원 → 1천만 원 ~ 3억 원
 - (단체) 5천만 원 ~ 4억 원 → 5천만 원 ~ 10억 원

□ 추진계획

- '19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시행지침 송부 : '18. 12월말
- 지원계획 공고 및 사업신청 접수 : '19. 3월말
- 지원 대상사업 운용심의위원회 심의·확정 : '19. 4~5월
- 농어업인 사업추진 및 용자 실행 : '19. 6~12월

□ 협조사항

- '19년 상반기 “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” 신청 : '19. 3. 29까지
 - 농어업인 단체 회원들에게 진흥기금 홍보 철저
 - 사업신청 시 운영자금/시설자금 구분하여(상환기간 확인) 작성 신청
 - 사업신청 시 농협 시·군지부 용자가능여부 및 용자액 확인 후 신청

②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 신청 홍보

- ❖ 농번기 인력난 해소 및 여성농업인의 가사부담을 완화하고 농촌과소화에 대응하여 마을 공동체 기능회복을 위하여 농촌마을 공동급식 신규추진

□ 사업개요

- 사업량 : 160개소 * 당초 90 → 160개소로 확대(70개소 ↑)
- 사업비 : 642백만원(도비 154, 시군비 359, 자부담 129)
- 지원기준 : 도비 24%, 시군비 56%, 자부담 20% / 4백만원(개소당)
- 지원대상 : 마을공동 급식시설(장소, 취사시설 포함)를 구비하고 20인 이상 급식을 희망하는 농촌마을
- 사업내용 :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(조리원 인건비, 부식비)
 - (인건비) 시행년도 최저임금 이상 적용 / 40일 이내
 - (부식비) 연간 40일 범위 내에서 1일 식사인원(1명당) 3천원 범위 내
- '19년 시군별 가내시 현황(당초)

합계	춘천시	원주시	강릉시	삼척시	홍천군	횡성군	영월군
90	2	15	2	2	5	30	2
평창군	정선군	철원군	화천군	양구군	인제군	고성군	양양군
3	10	3	5	5	2	2	2

□ 협조사항

- 당초 가내시 규모보다 증액편성, 추가수요조사 추진 : '19. 1월말까지
 - 1월말까지 시군별 추가수요 파악하여 시군별 최종 사업량 확정(2월초)
- 마을별 사업홍보 등 독려, 수요가 있는 경우 시군 농정부서 신청

③ 청년 후계인력 육성 · 지원 사업 홍보

- ❖ 정부와 도는 지속가능한 농촌유지 목적으로 농업 후계인력 양성 시책 역점 추진중
- (도) '17.7월 청년농업인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 → 연차별 확대시행 예정

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

- 사업량: (1차) 63명 배정완료, (2차) 20명 내외 추가 예정
- 연령: 만 18세 이상 ~ 40세 미만 * '78.1.1 ~ '00.12.31 이전 출생
- 영농경력: 독립경영 3년 이하(독립경영 예정자 포함)
- 지원금액: 독립경영 (1년차) 100만원, (2년차) 90만원, (3년차) 80만원
- 사업신청 : 1. 31까지, Agrix 직접 접수 → 서면 · 면접평가 2~3월

② 귀농인 정착 지원 → 지원범위를 승계농 까지 확대

- 사업량: 139명 * '19 신규선정 : 50명(귀농 30, 승계농 20)
- 사업비: 704백만원(도비 352, 시군비 352)
- 지원대상: 사업공고일 기준 농촌지역에 2년 이내 및 3~5년 이내의 영농 승계(전업농) 만 20세 이상 45세 이하 농업경영인으로 교육 이수 등의 자격을 갖춘 자
- 지원내용: 가구당 (1년차) 월 800천원, (2년차) 월 500천원 정액 지급
- 사업신청 : 1월중(시군별 상이), 시군 읍면동 및 농정부서

③ 농촌총각 결혼지원 → 지원 금액 및 인원 확대

- 사업비 : 210백만원(도비 84, 시군비 105, 자부담 21)
- 지원기준 : 도비 40%, 시군비 50%, 자부담 10% / 1인당 12백만원
※ '18년도 지원기준 : 도 20%, 시군비 50%, 자부담 30% / 7.5백만원
- 지원대상 : 농촌거주 실제영농종사 만 50세미만 미혼 남성농업인
- 사업내용 :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
- 항공료, 체재비, 맞선비용, 결혼식 비용, 비자발급비용 등

④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(도자체, 신규)

- 사업량 : 30명
- 사업비 : 600백만원(도비 144, 시군비 336, 자부담 120)
 - * 지원기준 : 도비 24%, 시군비 56%, 자부담 20%
- 지원대상 : 청년농업인(만 18세 이상 ~ 45세이하)
 - *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18세이상 ~ 45세이하('74.1.1 ~ '01.12.31 출생자)
- 사업내용
 - 생산유통, 제조가공, 체험·관광, 브랜드개발, 마케팅, 주택 개보수임차 등
 - * 영농창업 기반구축에 필요한 자율적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
- 선정·지원방식 : 사업계획 공모·평가, 차등 지원(1~3천만원 / 인)
- 추진일정(예정)
 - 사업신청(청년농업인, 3.15까지) → 서류검증·서면평가(시군, 3.22까지)
 - 발표평가(도, 4.10) → 사업확정 및 보조금교부(도→시군, 4월)

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(신규) → 정부 공모 접수 중

- 사업량 : 전국 4개소
- 사업비 : 개소당 8,025백만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- 사업내용 : 단독주택형 장기(~10년)임대 단지(25평형, 30호 규모)
공동육아나눔시설, 커뮤니티 시설을 패키지로 조성
- 입주대상 : 귀농귀촌 만 40세미만 청년 또는 신혼부부(자녀 양육자)
- 추진일정(예정)
 - 사업신청(부지 등 확보 후, 시군→도, 3.4까지) → 1차평가(도, 3.29까지)
 - 2차 서면·현장 평가(농식품부, 4월) → 사업확정(4월말)
- 협조사항 : 청년인력 필요성을 시군 농정부서 설명, 사업신청 독려

④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신청

- ❖ 농촌지역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향상 및 농촌 어메니티 증진
- ❖ 주민주도 계획적인 개발로 농촌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 도모

□ 사업개요

- 사업대상 :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·군

* 9개 시군 : 원주, 강릉, 삼척, 홍천, 횡성, 영월, 평창, 정선, 양양

- 사업비

- 농촌중심지 활성화 : 150억원 이하±a
- 기초생활거점 : 40억원 이하±a
- 마을만들기 : 종합개발 10억원 이하, 자율개발 5억원 이하
- 농촌다움 복원 : 20억원 이하

- 지원기준 : 국비 70%, 지방비 30% * 체험·소득사업은 자부담 별도

- 사업내용 : 유형별 지원기준에 따라 아래 기능별 사업내용 참고

- 기초생활기반확충 : 도로·주차장·문화복지시설 등 주민 공동체적 삶 영위 필요 기반시설
- 지역소득증대 : 가공시설·집하장·저온저장고·체험시설 등 지역자원 활용 공동소득 증대 시설
- 지역경관개선 : 경관개선·생태공원·쓰레기분리시설 등 쾌적한 주거공간과 자연경관 유지 시설
- 지역역량강화 : 주민교육·리더양성·전문기양성·홍보마케팅 등 주민역량강화 및 사업부대비용 등

□ 2019년 추진계획

- 신청방법 : 사업신청자료(신청서·계획서·증빙자료) 농산어촌공간 정보시스템 등록 및 공문으로 동시 제출(2.8)

- 추진일정

- (신청) 2.8 → (도 1차 평가) 2월 → (중앙 2차 평가) 3~4월 → (사업선정) 9월

□ 협조사항

- 신청 기준 및 기한 준수, 희망마을 기한내 신청 협조

측산과 소관

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

- ❖ 가축분뇨법 개정 시행('15.3월)에 따른 적법화 미 조치 시 축사 폐쇄 및 사용 중지
- ❖ 이행기간 내 전 농가 적법화 완료 조치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으로 농가 소득 향상

□ 현 황

단계별	적법화 기 간	대상 농가	완료		추진중		미추진	
			호	%	호	%	호	%
합 계		3,752	1,459	38.9%	1,636	43.6%	657	17.5%
1·2단계	'19.9.24까지	2,585	1,232	47.7%	1,303	50.4%	50	1.9%
3단계	'24.3.24까지	1,167	227	19.5%	333	28.5%	607	52%

* 1·2단계 추진불가: 50호(폐업 42, 축사이전 8)

□ 그간 추진상황

- 무허가 축사 개선 설명회('15.12.) ⇨ 농가 홍보, 지침 설명
- 적법화 추진계획 수립('16.1.) ⇨ 3단계(기반구축→이행→달성) 대책
- 도·시군 대책반 회의 3회('16.2.~) ⇨ 적법화 대책반 편성 운영
- 전국 최초 건축설계비 30% 감면('16.11.) ⇨ 농가 재정 부담 완화
- 전국 최초 측량·설계비 지원/2백만원/호('17.4.) ⇨ 농가 재정 부담 완화
- 적법화 지역상담반 운영('17.8.~) ⇨ 축산농가 적법화 상담 지원
- 도 무허가 담당공무원 BH간담회 실시('17.12.) ⇨ 적법화 연장 건의
- 군·관 실무협의('17.12.), 국조실 규제개선 간담회('18.7.) ⇨ 규제완화 건의
- 시·군 부단체장 대책회의(2회), 도 담당별 부단체장 면담 독려(3회)

□ 협조 및 당부 사항

- 12단계,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농가 적법화 홍보 협조
 - 소속 회원농가 및 축산농가 적법화 참여 및 이행 독려
- 시군별 이·반장 협의회, 소속 단체 회원 주도로 사업 참여 독려

②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사시설 개선 추진

- ❖ 지구 온난화 및 이상기후 발생빈도 증가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매년 증가
- ❖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축사시설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항구적인 예방대책 마련으로 안정적 가축사육을 유도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- 사업량 : 292개소
- 사업비 : 4,700백만원(도비 705, 시·군비 1,645, 자부담 2,350)
- 지원기준 : 도비 15%, 시·군비 35%, 자부담 50%
- 사업내용

- 지붕 단열개선(젓소, 돼지, 닭): 52개소/ 지붕 단열보강, 우레탄 시공 등
- 냉방시설 보완(돼지, 닭): 26개소/ 쿨링패드, 냉방시설 등
- 온도조절 장비(한우, 젓소): 204개소/ 스프링클러, 안개분무기, 환풍기 등

- 지원한도: 지붕단열(50백만원/개소), 냉방시설(30), 온도조절장비(5)

□ 그간 추진상황

- 추진실적 : 2019년 신규사업
- 타 사업 지원실적
 - '18년 폭염 및 가뭄대책지원(예비비): 약품 730백만원/ 시설 3,740
 - '18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폭염피해 지원 추가: 장비 등 2,433백만원

□ 협조 및 당부 사항

- '19년 폭염대비 축사시설 구조개선 사업 농가 홍보 협조
 - 축산농가 홍보 강화로 폭염 전 사업추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
 - 기존 지원농가에 대해서도 미 지원 축사 추가지원 홍보
- 사업 신청 및 관련 세부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부서 문의
- 시군별 이장협의회, 소속 단체 회원 주도로 사업 참여 독려

③ 축산법 주요 개정사항 홍보

❖ 축산업 허가·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등 축산환경 개선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

⇒ 가축전염병 발생 사전 방지 및 축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

* 개정 공포: '18. 12. 31. 시행: '2020. 1. 1.부터

□ 주요 개정내용

구 분	주요 개정내용
축산업의 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축산업 허가·등록 요건으로 배출시설 허가·신고 및 처리시설 설치, 매몰지 확보(토지임대계약, 가축처리계획으로 대체 가능) 추가 ○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닭·오리에 관한 종축업·사육업 허가 금지 ○ 기존 닭·오리 사육업 허가 농장 500m 이내 닭·오리에 관한 종축업·사육업 허가 및 가금 사육업 등록 금지 ○ 축산업 허가·등록자가 시설·장비 및 사육방법을 개선할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 신설
축산업 허가 결격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영, 거짓허가 등 중대한 위법으로 처벌 받은 자에 대한 재허가 금지기간 연장(1년→2년)
축산업의 허가취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축산법 상 허가요건인 시설·장비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상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등 규정 위반으로 전염병을 발생·확산시킨 경우 축산업 허가취소 처분토록 규정 신설
축산업 허가농가 정기점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시·군·구의 정기점검 주기를 1년에 1회 이상(현행: 2년에 1회 이상)으로 강화
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의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수교육 주기를 허가받은 자 1년에 1회 이상(현행: 2년에 1회), 등록된 자 2년에 1회 이상(현행: 4년에 1회)으로 강화
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림축산식품부와 시·도는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, 축산환경 개선계획, 시·군·구는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
과태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태료 부과 상한액 상향(500만원 → 1천만원)

□ 협조 및 당부 사항

○ 생산자 단체에서 소속 축산농가에 축산법 개정사항 전파 협조

* 축산농가에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·반장 및 작목반 회의시 홍보

유통원예과 소관

① 농산물 안전성 강화(PLS)에 따른 농약사용 준수

- ❖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(PLS) 시행에 따른 제도의 조기정착
- ❖ 올바른 농약사용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과 부적합 농산물 유통 차단

□ 사업개요

- 도입배경 : 수입·국내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PLS제도 도입(식약처)
 - * PLS : 잔류농약기준이 설정된 농약성분 외에는 일률기준(0.01ppm이하) 적용
- 추진시기 :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PLS 적용
- 대응방향
 - 농식품부 : 등록농약 확대, 비의도적 농약피해 최소화, 월동·장기재배 농산물에 대한 PLS 적용시기 조정, 교육·홍보 강화·집중
 - 강원도 : PLS제도 교육, 책자 및 팜플렛 등 홍보물 제작·배포, 언론 매체 등 대외홍보, 출하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강화

□ 추진계획

- 경로당별 PLS 교육·홍보(1~3월)
- 농산물 안전성 강화 교육·홍보 계획 수립·추진(2~12월)
- 미래농업교육원 농산물 안전성(PLS) 교육 시행(2월, 12월)
- 농산물 (잔류농약)안전성 검사 계획 수립 및 추진(2~12월)

□ 협조사항

-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시군별 각종 PLS 교육 적극 참여
- 올바른 농약사용 준수 협조
 - *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확인,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,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 횟수 준수, 수확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, 출처 불명 또는 밀수농약 절대 사용금지

② 무·배추 채소가격안정제 참여

- ❖ 무·배추 출하량 부족 또는 과잉에 따른 가격 불안정에 대한 농업인 안정적 소득보전 등 주산지 중심 사전적·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도모

□ 사업개요

- 사업량: 5개 품목(봄배추, 고랭지 배추·무, 가을배추·무)
- 사업비: 5,556백만원(국비 1,667, 지방비 1,667, 농협 1,111, 자부담 1,111)
 - 재원: 국비 30%, 도비 15%, 시군 15%, 농협 20%, 농가 20%
- 지원내용: 가격하락 차액보전, 가격상승 출하장려, 사전면적조절, 출하중지 약정금액
 - * 가격 하락시 도매시장 5개년 평균가격(최고, 최저 제외)의 80%를 보전기준 가격으로 삼고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('16시행)

□ 참여계획

- 지원자격: 농협경제지주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(계약재배) 참여하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
 - 농협경제지주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에 최근 2년 연속 참여한 농업인
 - 재배면적이 0.3ha 이상이고, 재배경력 3년 이상인 농업인
 - 기타 자격기준 : 농업경영체 등록, 재배기술 수준, 농협 및 정책사업 협조도 등
 - * 사업 참여제한 : 농협 여신업무 규정상의 여신취급 제한자, 사업 신청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농업인
- 추진시기: 봄배추(6~7월), 고랭지 배추·무(7~10월), 가을 배추·무(10~11월)
 - * 사업추진결과 지원시기는 품목별 주산지 협의체에서 결정

□ 협조사항

- 채소재배농가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해 사업참여(농가→해당 지역농협)
 - * 신청기한: 봄배추·고랭지 배추·무: 3월말, 가을 배추·무: 8월말

③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입점 협조

- ❖ 도내 우수농수특산물의 수도권 판매·식자재 대량납품 확대 등을 위한 진품센터 입점 협조(서울시 마포구 소재)

□ 설치개요

- 위 치 :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5(강원도민회관 지하 1층)
- 면 적 : 380m²(매장 364, 사무실 16)
- 품 목 : 도내 농수특산물 1,500여 품목(110여 업체)
- 판매방법 : 농가(업체) 수탁판매, 직매입판매, 알선판매, 전자상거래, 직거래 등
- 입점가능품목 : 강원도지사 품질인증상품, 친환경 인증 등 국가인증상품 시장·군수 추천제품 및 전략 육성상품 등

□ 신청방법 및 절차(연중 신청가능)



□ 협조사항

- 강원도지사 품질인증제품 생산업체의 진품센터 매장 입점 홍보
- 1차 농산물·가공품의 대량 소비처 납품확대를 위한 상담 가능
- ※ 입점 후 개별 상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, 보완·개선점, 유통시장 정보 등을 업체에 제공하여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

④ 식품소재·반가공산업 사업 신청

- ❖ 농산물 구매액 비중 높은 식품소재·반가공산업 육성,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강화
- ❖ 지역농산물의 수요확대 및 수급조절과 농가소득 증대 도모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량 : 전국 10개소 이내(연간)

* 연도별 선정 : ('15) 3개소 → ('16) 7 → ('17) 10 → ('18) 9 → ('19) 8

○ 사업대상 : 영농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·농협 등 생산자단체, 식품기업

○ 지원기준 : 개소당 700백만원(국비 30%, 지방비 30%, 자부담 40%)

* 지원한도 : 개소당 총사업비 1,500백만원

○ 사업내용: 식품소재·반가공품 생산·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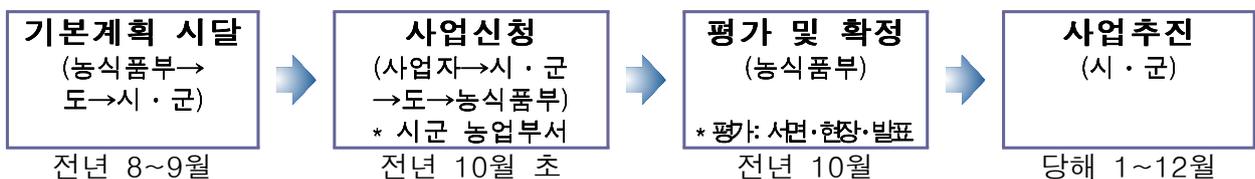
<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의 개념 >

□ (개념) 원료 농축수산물과 완제품(BtoC)을 제외하고,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과 식품첨가물을 포함(BtoB)

□ (유형별 분류) 원료의 반가공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

- ① 식자재형: 기존 원료를 전 처리한 단순 가공상태(식재료 및 소재 전단계)
- ② 농축(착즙형): 과실류의 소재화 제조 관련 저비용 공정(음료 첨가물 등)
- ③ 분말형: 건조 후 분쇄 공정,첨가물 활용(식품 조미료, 즉석식품 스프, 제과 첨가물 등)
- ④ 추출(농축분말형) : 원료의 강한 향과 저장성 및 유통 편리
- ⑤ 첨가물 소재형 : 주요 유효성분을 정제선별 → 건강기능식품, 바이오소재 활용

□ 공모(신청)절차



○ 평가방법: 농식품부 선정위원회 구성·운영

□ 협조사항

○ 농식품부 추진일정에 맞추어 적기 사업신청 및 평가 대응(8~10월)

- 사업신청 희망자의 경우 시군과 사업계획 수립 협의 등 사전준비

친환경농업과 소관

①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추진

❖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'18~'19까지 「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」 중점 추진

□ 사업개요

- 사업량 : 2,362ha / '18년 1,968ha
- 사업비 : 8,031백만원(국비 6,425, 도비 482, 시군비 1,124)
- 지원단가 : ha당 평균 340만원 소득보전금 지원 / 세부 지원단가 인상

구분	조사료	일반뜻거름작물	두류	휴경	전체(평균)
단가(만원/ha)	400('18) → 430('19)	340 → 340	280 → 325	- → 280	340

→ 제외작물 : 무, 배추, 고추, 대파(과잉 재배시 정부 수급불안 우려 품목)

□ 주요성과

- '18년 논 타작물 재배사업 9개 광역도 중 전국 4위, 이행율 2위
- 강원 쌀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
 - 쌀 생산 적정면적 유지 : ('17) 29,710ha → ('18년) 29,006ha / △704ha
 - 강원쌀값 회복 : ('17) 176,389원 → ('18년) 224,436원 / 48천원 ↑
- 안정적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(336ha) → 지역 내 생산 소비체계 마련

□ 협조사항

- '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농업인단체 참여 및 신청 적극 협조
 - 신청기간 : '19. 1. 22 ~ '19. 6. 28. / 시군, 읍면동, 농업기술센터
- 시군별로 구성 될 「쌀 생산조정 추진협의회」 운영 시 쌀전업농 등 농업인 단체 참여 협조 / 시군+농업인단체, 유관기관 참여(15명 내)
 - 주요역할 : 시군 생산농가 참여 홍보·독려, 대상자 선정심의 참여 등
-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는 도 자체 시책사업 참여 확대 요청
 - 잡곡산업, 메밀재배단지 조성, 찰옥수수명품화 지원 신청 협조

②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

- ❖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, 폭염 등 재해발생 빈도 및 피해규모 지속 증가 추세
- ❖ 농협 등 연계 신규 가입대상품목의 적극적 홍보를 통한 재해보험 가입을 제고

□ 사업개요

- 사업량 : 10,000ha(18개 시군)
- 사업비 : 5,714백만원(국비 2,857, 도비 600, 시군비 1,400, 자부담 857)
- 사업내용 :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지원
- 지원조건 : 572천원/ha(국비 50%, 도비 10.5%, 시군비 24.5%, 자부담 15%)

□ 추진상황

- '18년 기준 재해보험 가입률은 전국평균 30%보다 낮은 22% 수준
- 가입현황 : (전국) 344천ha/1,145천ha, (강원) 12천ha/53천ha
- 시군별 가입현황('18년)

시군	춘천	원주	강릉	동해	태백	속초	삼척	홍천	횡성
가입률(%)	27.8	3.1	8.9	8.0	0	11.6	2.1	5.7	25.5
시군	영월	평창	정선	철원	화천	양구	인제	고성	양양
가입률(%)	7.4	1.7	14.6	61.8	3.2	5.0	5.3	57.8	10.4

⇒ **춘천, 횡성, 철원, 고성을 제외한 전 시군이 가입실적 평균치 이하**

- 농림축산식품부 노지작물 위주 재해보험 가입대상품목 확대 발표
- 대상품목 : ('18) 57개 → ('19) 62개 / 5개 품목(무, 배추, 호박, 당근, 파) 추가
- 강원도 주 생산품목인 고랭지 채소류 중점 가입 확대, 가입률 제고
- 2019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확대 지원(자부담 20 → 15%)

□ 협조사항

- 보험가입 신청 및 지원관련 문의 → 읍·면·동사무소, 농협 방문
- 보험상품 안내, 가입 보험료 산정 및 지역별 보조금 지원사항 등 안내
- 재해보험 가입시 작목별 상품 판매시기 사전 확인 후 가입 신청
- 시설작물(연중), 사과·배(2~3월), 벼(4~6월), 감자(5~6월) 등

동물방역과 소관

① AI·구제역ASF 예방을 위한 자율적 차단방역 강화

❖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AI·구제역·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기간('18.10.~'19.2월) 동안 회원농가 대상 자율적 차단방역 강화 협조

□ 발생현황('18년)

- (고병원성 AI) 22건(경기 5, 충청 4, 전라도 13) * 우리도 '17. 1월 이후 비발생
- (구제역) 경기 김포 농장 2건(A형) * 우리도 '15. 4월 이후 비발생
- (ASF) 중국 96건(농장 91, 도축장 4, 야생멧돼지 1) * 국내 비발생

□ 문제점

- (AI)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·H7형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, 소규모농가·전통시장·중개상 등 방역취약대상 발생 우려 등 특별방역기간 중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시기임
- (구제역) 백신항체양성률 소 97.8%(전국 97.4), 돼지 82.3%(전국 80.7)로 전국 평균 이상이나 비육돈의 경우 79.5%로 미흡하고, 양성률이 미흡한 농가 22호(소 7, 돼지 12, 염소 3) 등 발생 위험요인 상재
- (ASF) 중국에서 지속 발생 중이고, 양돈농가 외국인근로자(284명), 남은음식물 급여농가(33호) 등 관리소홀 시 언제라도 유입 가능

□ 협조 및 당부사항

- (양계협회) 농가 모임·축제 등 참여 금지, 야생조류 차단을 위한 그물망 설치·보완, 매일 소독 등 자율적 차단방역 철저 홍보·교육
- (한우·낙농·한돈협회) 구제역 백신 적기접종, 특히 2차 및 추가 접종(6개월마다) 이행, 소독·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 철저 홍보·교육
- (한돈협회) 외국인근로자 ASF 방역교육 매일실시, 남은음식물 급여자제 및 열처리 급여 등 위험관리 철저, 야생멧돼지 접근 차단관리 등 홍보·교육

② 소독 및 방역 시설·장비 지원 홍보

❖ 축산 농가 및 시설 상시 방역 체계 구축과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한 맞춤형 소독 및 방역 시설·장비 지원 사업 회원농가 신청 협조

□ 지원내용

구 분	소규모 농가	전업 농가	축산시설 등
지원대상	소 50두, 돼지 1천두, 닭·오리 3천수 미만	소 50두, 돼지 1천두, 닭·오리 3천수 미만	도축장 등 축산시설, 종축장, 부화장, 대규모 농장(단지)
지원품목	① 소독장비 (이동식동력분무기 등) ② 소독시설(차량대인) ③ 방역시설 (출입구 차단, 출입통제 등)	① 소독시설(차량대인) ② 방역시설 (출입구 차단, 출입통제 등)	① 소독시설(차량, 시설 내·외부 자동소독시설, 차량적재용 방제기) ② 세척시설 (차량·장비 세척)
지원단가	(장비) 700천원/개소 (시설) 5,000천원/개소	5,000~10,000천원/개소	50,000천원/개소
지원비율	보조 70%, 자담 30%	보조 50%, 자담 50%	보조 50%, 자담 50%

□ 당부사항

- 소독방역 시설 및 장비 미설치(미구비) 농가 사업신청 독려(**19. 1월말까지**)
 - 특히, 방역취약 소규모 농가 등 소독장비 구비토록 신청 독려
- 겨울철 출입차량 소독시설 동파 방지 주의(열선설치 등)
- 축산농가 방역규정 준수 및 농장단위 차단방역 철저 홍보
 -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구비, 출입차량 소독실시 및 출입기록부 작성·보관
 - 주 1회 이상 농장 내·외부 소독실시 및 소독실시기록부 작성·보관

③ 낭충봉아부패병 차단방역 강화

- ❖ 급속도로 발생되고 있는 낭충봉아부패병의 확산 차단을 위한 회원농가 대상 4월말까지 집중적인 예방조치 강화 협조

□ 발생현황 : 16개 시·군 277호 4,195봉군

- (토종별) 246/1,440(춘천 5/37, 원주 7/49, 강릉 1/1, 태백 1/2, 삼척 5/123, 홍천 56/313, 횡성 47/184, 영월 2/7, 평창 47/181, 정선 24/218, 화천 3/71, 인제 41/180, 고성 1/20, 양양 6/47)
- (서양별) 31/2,755(원주 1/5, 강릉 4/220, 동해 1/300, 태백 2/400, 삼척 14/1,351, 홍천 1/30, 평창 4/108, 정선 2/290, 화천 1/50, 양구 1/1)

□ 문제점

- 현재 개발된 완벽한 치료대책이 없어 발생 시 급속도로 확산
- 이상기후(기온하강, 강수량증가)로 인한 밀원감소로 면역력 저하
 - 채밀시기 평균기온이 '17년 대비 1℃이상 낮고 평균 강수량 높음
- 가축사육업 등록제외 대상인 꿀벌의 무분별한 사육과 관리 미흡
 - 사양·질병관리 지식이 없는 일반인 누구나 사육 가능하여 질병에 무방비
- 제2종 가축전염병이나, 이동제한 및 소각 등 방역조치 이행 미흡
 - 발생봉군 소각 지연, 이동제한 중 추가 입식 등으로 재발사례 증가

□ 협조 및 당부사항

- (예방추진)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감염특성상 전국에서 동시에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4월말까지 예방약품(메파티카)으로 3회 예방 및 각종영양제 동시 투여
- (신속신고) 증상이 나타날시 신속신고 및 발생봉군 소각

④ 축산농가 잔류물질 오·남용 방지 당부

- ❖ 사람에게 내성을 일으킬 수 있는 항생제 등 사용 시 잔류위반 및 오·남용 방지 할 수 있도록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 회원농가 대상으로 홍보 강화

□ 검출현황('18년) : 18농가 21건

- (축종별) 한우 1건, 젓소 5농가 5건, 돼지 9농가 12건, 산란계 3농가 3건
- (원인별) 휴약기간 미준수 9건, 권장량 초과 4건, 투약기록 미기록 4건, 미승인 약제 투여 2건, 대상축종 위반 1건, 원인불명 1건
- (위반약품) 항생·항균제 19건, 소화제 1건, 살충제대사체 1건

□ 문 제 점

- 사용금지 항생제 및 동물용의약품 성분 지속 검출
 - 축산농가에서 사용금지 항생제* 및 동물용의약품** 잔류위반과 일선 수의사들의 판매(처방) 사례 등이 지속 발생
 - (예) 계란] 엔로플록사신 / 착유우] 메토클로프라미드(소화제) 잔류

※ 사용금지 동물용의약품

《*축산농가 사용금지 항생제》

소·돼지 : 노르플록사신, 오픈플록사신, 페닐부타존, 페플록사신
 육 계 : 노르플록사신, 오픈플록사신, 페플록사신
 산란계 : 노르플록사신, 오픈플록사신, 엔로플록사신(시프록사신 포함), 네프록사신, 나라신, 독시싸이클린, 마두라마이신, 샘두라마이신, 설파제,

《**사용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성분》

산란계 : 구아이페네신, 록시스로마이신, 로페라미드, 아크리놀, 나스타틴, 니트로 소린, 베타나민, 수산화브롬글루타민산 마그네슘염
 착유우 : 구아이페네신, 아미노피린, 메토클로프라미드, 스키폴라민, 펜타메틸렌테트라졸, 베르베린, 디에칠카바마진, 미노싸이클린, 로페라미드, 테트라미졸, 카르바롤, 난드롬론, 비치오놀, 페토티아진, 메터나민, 아미노메탄설폰산, 메틸에페드린
 식용닭, 식용소 : 안트라닐산

□ 협조 및 당부사항

- (생산자단체) 사용 금지 항생제 및 동물용의약품을 숙지할 수 있도록 회원농가 홍보 강화
- 특히, 지난 2017. 5. 22일부터 '엔로플록사신'이 함유된 동물용의약품 78개 제품 산란계 농가 사용 전면 금지, 2021년부터는 육계 등 모든 닭에서 사용 금지 예정임.
- 아울러,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
 - 사용설명서 확인, 휴약기간 준수, 항생제 오·남용 금지, 투약기록 기록 철저
 - 착유 중인 소나 달걀을 낳는 닭에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우유나 계란에서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사용할 것 당부
- (축산물위생시설) 마지막으로,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HACCP 적용 철저

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사업 추진

- ❖ 애견인구 증가에 따른 유기견 발생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해결
- ❖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예방을 위한 펫티켓 준수 홍보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사회구조 변화(핵가족화 등)로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비율 증가 추세
* 반려동물 양육현황(전국 가구대비) : ('12) 17.9% → ('15) 21.8 → ('17) 28.1
-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더불어 유실·유기동물 발생 수 증가
* 발생두수 : ('15) 3,613 → ('16) 3,939 → ('17) 4,764 → ('18.11.) 4,862 / 연평균 15% 증가

□ 추진사항

- 유기동물 보호·관리지원('11~'18) : 동물보호센터 19개소 운영 중 * 정선군 2
- 유기동물 입양비지원('18) : 20만원까지 지원
- 길고양이 중성화사업('16~'18) : 포획 후 중성화수술, 방사
- 반려동물 등록제지원('13~'18) : 반려견 내장형칩 동물등록 시 시술비 지원
*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(원주시·속초시)
- 반려동물 동행캠페인 추진('19) : 동물유기 방지, 동물보호법 준수 등 홍보

□ 협조 및 당부사항

- (반려동물등록 철저)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업체 확인 후 실시(시군 문의)
* '13년 이후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사항임
- (유기동물 입양) 진료비, 예방접종, 내장형칩 동물등록, 미용비 등 최대 20만원 지원(자부담 50%)
- (반려동물 소유주의 의무 준수)
 -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
→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 -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 : 과태료 (1차) 20만원 → (2) 40 → (3) 60
 - 목줄 미착용 시 : 과태료 (1차) 20만원 → (2) 30 → (3) 50
* 맹견의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
 - 배설물 미수거 시 : 과태료 (1차) 5만원 → (2) 7 → (3) 10

농산물원종장 소관

① 창의농업무한상상실 운영 홍보

- ❖ 학생, 농업인 대상 농업분야 무한상상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상상력을 발휘·구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
- ❖ 농업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농업분야 신 소득원 창출에 기여

□ 사업개요

- 사업대상 : 체험교육 목적 농업인 또는 단체
- 프로그램운영
 - 찾아가는 창의농업무한상상실 : 체험교구제작, 모델링교육
 - 편리한 농촌생활을 위한 앱개발교실 : 아두이노활용, 코딩교육
 - 창작연구회 지원 : 창의성개발교육, 지적재산권교육
 - (지원장비) 3D프린터, 레이저조각기, CNC 등

- ※ 잠사곤충 기술지원 및 도시민 홍보교육
- 기술지원 : 3개소 (원주 고산리, 삼척 사곡리, 영월 수라마을)
 - 교 육 : 곤충 전문기술 교육(연 6회), 잠사곤충 현장기술컨설팅(수시)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

□ 협조사항

- '19년도 창의농업무한상상실 운영사업에 대해 해당 개인 및 단체 신청 홍보
 - 개인은 수시 접수 후 교육인원 확정하여 일정 알림
 - 단체의 경우 교구제작 및 지원사항은 관련내용 사전상담 후 프로그램 진행

② 토종잡곡 종자생산·공급

- ❖ 소비자의 웰빙수요를 충족하고,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토종잡곡 생산·공급으로 생산성 향상 및 농업인 소득 증대

□ 사업개요

- 생산·공급 계획량 : 2,100kg
 - * 토종잡곡 최근 5년간('13 ~ '18) 공급량 : 13,811kg
- 대상작물 : 7개곡종/11품종
 - 콩(서리태콩, 쥐눈이콩, 약선콩) 팥(중원팥, 칠보팥, 금구슬팥)
 - 양절메밀, 선흑참깨, 황금조, 황금기장, 황금찰수수

□ 추진계획

- 작물별 종자생산계획 수립 : '18. 1월중
 - 종자수요 조사 및 최근 5년간 공급실적을 토대로 생산량 확정
- 종자공급가격 결정 : '18. 1월중
 - 가락동농산물도매시장가격, 시중가격 및 농업기술원과 공급가격 협의 결정
- 종자 신청 및 공급
 - 종자 공급량 통보(농산물원종장 → 강원도농업기술원) : '18. 1월말
 - 종자 신청접수(시군 농업기술센터) : '18. 1월중 ~ 2월말
 - 종자 공급(농산물원종장) : '18. 2월말 ~ 3월초

□ 협조사항

- 토종잡곡 재배농가의 품종별 종자신청 홍보
 - 사라져가는 토종잡곡의 발굴과 재배기술 지원

감자종자진흥원 소관

① '19년산 봄감자 보급종 신청 안내

❖ 체계적인 기술지도와 엄격한 채종포장 관리로 강원도에서 생산·보증하는 '19년산 봄감자 보급종에 대하여 희망하는 농가에 적기 공급하고자 함

□ 신청개요

- 신청기간: (추기) 9. 1. ~ 9. 30. (춘기) 12. 1. ~ 12. 31.
- 공급기간: (추기) 11. 1. ~ 11. 30. (춘기) 익년 1월말 ~ 4월초
- 공급품종: 수미, 조풍, 하령, 서홍, 오른
- 공급물량: 7,500톤 규모(도내 약 30% 수준 공급)
- 공급가격 (2018년산 기준) * 향후 공급가는 변동될 수 있음
 - 도내(20kg/박스): (추기) 28,980원, (춘기) 30,260원
- 공급장소: 신청지역의 해당 지역농협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*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 신청

- (읍·면·동, 시·군 농업기술센터) : 관내 농가 신청홍보
- (농업인) : 농업인 신청서 작성·제출
- (읍·면·동, 시·군 농업기술센터, 농업기술원) : 취합, 물량신청
- (감자종자진흥원) : 지역농협으로 공급

□ 협조 및 당부사항

- 보급종 감자는 미 소독 상태로 공급되며 파종(종서절단) 시 소독 필요
- 공급받는 즉시 상자를 열어 환기가 되도록 보관(장기 보관시 3 ~ 4℃)
 - 비닐하우스 등 보관하는 경우 고온에서 흑색심부병 발생 유의

축산기술연구소 소관

① 축산기술 교육 참여 홍보

- ❖ 축산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개량방법, 번식 선진기술 습득으로 양축농가 소득증대 기여
- ❖ 현장애로 기술 및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교육생 만족도 제고

□ 교육개요

- 교육대상 : 축산농가
- 교육인원 : 230명
 - 소 자가수정교육 140, 자가인공수정 보수교육 50, 농가 컨설팅 40
- 교육장소 : 7개 권역(춘천, 원주, 강릉, 홍천, 평창, 철원, 양양)
- 교육내용
 - 인공수정 이론교육, 암소 생식기 해부 및 정액 주입 실습
 - 송아지 질병·사양관리, 한우 개량 및 임신감정 등 전문기술 교육
 - 수정란 이식 수태율 향상을 위한 농가 컨설팅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

□ 협조 및 당부사항

- '19년도 시·군별 교육 축협·작목반, 축산단체 안내 : '19. 2월까지
 - 창업농, 축산후계자 소 자가수정기술교육 신청 독려
- 한우 사양기술, 개량, 수정란 이식 등 전문교육 수요는 시·군 및 지역축협과 협의후 신청

동물위생시험소 소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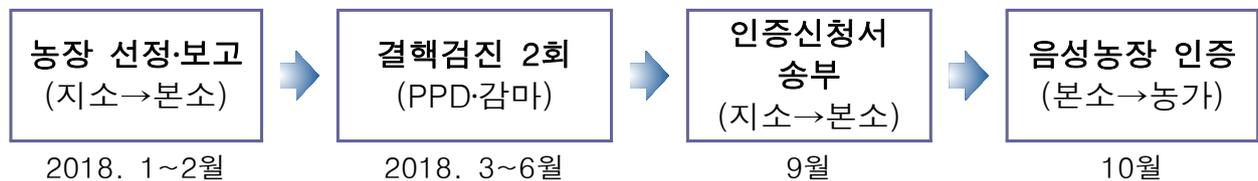
①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 참여

❖ 결핵병 청정화 달성 기반 구축을 위한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 도입

□ 사업개요

- 사업대상 : 외부입식이 없고 최근 3년간 젖소결핵병 비발생 젖소 농장
- 사업비 : 20백만원
- 지원비율 : 도비 100%
- 사업내용 :
 - 신청농장 연 2회 결핵병검사(PPD,감마인터페론) 실시 ⇨ 음성 시 인증
 - 음성 인증농장은 2년간 결핵검사 면제와 유방염 방제물품 등 지원

□ 사업절차



□ 협조 및 당부사항

-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 홍보
 -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시 2년간 결핵병 검사 면제 및 유방염 방제물품(약품,유두침지제 등)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홍보와 인증신청 마감 2월28일 전까지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

